

#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운영규정

제정 2026. 02. 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6항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5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하 “문기평”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기평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문기평의 운영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되,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중요한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방침에 따른다.

② 기타 문기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 문기평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검토·선정
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

10.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관리
1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지원
12.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문기평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문기평의 장(이하 “문기평 원장”이라 한다)은 문기평의 소관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문기평 소속 직원의 임면은 문기평 원장이 행한다.

② 문기평 소속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 사항은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문기평 원장)** ① 문기평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 원장이 임명하며, 문기평 원장의 공개모집 및 선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문기평 원장의 임기는 임명권자가 임명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문기평 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문기평의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문기평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문기평 원장이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문기평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⑤ 문기평 원장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문기평 원장의 경영계약)** ① 문기평 원장은 임기 중 관리해야 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진흥원 원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② 문기평 원장과 진흥원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문기평 원장의 신분보장)** 문기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문기평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진흥원 내규 및 문기평 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원장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 또는 문기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경영목표에 따른 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7.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권한의 위임)** 진흥원 원장은 「정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문기평 원장에게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 및 그에 필요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문기평의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2. 문기평의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및 집행
3. 문기평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집행
5. 기타 진흥원 원장으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제11조(책임과 의무)** ①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문기평 원장은 진흥원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문기평의 예산 및 결산은 진흥원과 별도로 운영한다.

② 문기평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문기평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문기평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제2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기평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
6.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문기평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체 규정 또는 규칙,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직제규정
  2.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인사규정
  3.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회계규정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14조(문서관리)** 문기평의 모든 문서는 문기평 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인장관리)**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하여 사용·관리한다.

**제16조(사업관리)** 문기평 원장은 수행사업을 독립적으로 선정, 계약 및 관리한다.

**제17조(일상감사 등)** ① 문기평 원장은 진흥원 상임감사를 통해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진흥원 상임감사는 필요한 경우 상임감사를 보좌하기 위한 문기평 부서 또는 직원에 일상감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2026.0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장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기평 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일은 기존 계약일을 기산한 임기를 적용한다.

**제3조(권리·의무 등의 위임)** 문기평의 설립으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와 관련된 기능, 사업, 시설, 예산, 인력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문기평에 위임한다.